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5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947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승재, 이준석, 양효승(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293, 2022고단657(병합), 2022고단206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22고단657』 사건 공소사실 제1.나항 2021. 8. 20.자 특수절도에 관하여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건대, 피고인은 W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당시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소년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2021. 8. 20.자 특수절도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현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2021. 8. 20. 02:30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J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롯데상품권 10만 원, 온누리 상품권 70만 원,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 국민관광상품권 20만 원 등 피해자의 소유인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021. 8. 20.자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K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권, 현금 등에 대하여 당시 다른 사람들과 나눈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피고인과 C은 위 범죄일시 무렵 여러 곳에서 다수의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금 10만 원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반면, C은 절취품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간의 기억이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K의 증언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이 넉넉히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현금 10만 원 외에 상품권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상품권을 절취한 바가 있다면 그 후 현금화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고 주장한다), ② 위 차량 내부 절도 당시 상품권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에 의존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차량에 상품권을 넣어 두었다고 언급하는 7월 중순쯤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8. 20.경까지 다른 연유로 상품권이 위 차량 안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고 그 상품권 총 액수도 불분명한 점, ③ 원심 공동피고인 C도 원심 공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변의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피해 차량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절취한 물건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 부정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2021. 8. 20자 특수절도 범죄사실 중 상품권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21행까지를 "피고인과 C은 2021. 8. 20. 02:30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J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



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수습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과 같은데, 이는 위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범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1. 8. 20.자 특수절도 부분(현금 1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5

판사 문채영 _____

판사 김아영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545 가.특수절도
나.특수절도미수
다.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주(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294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21. 8. 20. 자 특수절도의 공소사실 중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



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고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6-25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박정화 _____

주 심 대법관 김선수 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